



제 439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시청 지도 수단 제공 의무 강화 등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88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시청 지도 수단 제공 의무 강화 등 (안 제53조제2항 등)	3
※ [참고1] 관계 기관 의견	12
[참고2] 협회 및 민간업계 의견	13
[참고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별 시청 지도수단 운영현황 ·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8.

다. 회 부 일 : 2026.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청 지도 수단 중 어느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OTT 플랫폼별로 키즈프로필이나 프로필 잠금, 시청 내역 모니터링 등 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 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특히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적 통제가 곤란하여 그 활용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4항 및 제53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시청 지도 수단 제공 의무 강화 등 (안 제53조제2항 등)

개정안은 친권자들이 청소년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 적정성 평가 시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이 시청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여부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③ (생략)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다음 각 호</u> <u>의 사항을</u> ----- ----- ----- ----- 1.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2.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 3.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청 지도 수단의 제공 여부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 (생략)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u>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신설> <신설> ③·④ (생략)	② ----- ----- ----- ----- ----- -----<u>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시청 지도 수단을 모두</u>----- -----. 1. <u>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 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u> 2. <u>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u> 3. <u>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단</u>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이하 “현행법”이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라 함) 상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비디오물(OTT 등)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운영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는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하고 있음.

[표]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현황

2023년(9개)	2024년(1개)	2025년(3개)	2026년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쿠팡플레이, 티빙, 웨이브, 왓챠, LG유플러스, 위버스	sk브로드밴드(BTV)	네이버웹툰(컷츠), 카카오엔터(베리즈), 에스제이엠엔씨(MOA)	신규 사업자 지정 공고 중 (10월 지정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따라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사후 관리 및 법적 책임을 지게 됨.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으로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 비디오물제공업자는 등급분류(자체등급분류를 포함함)를 받은 비디오물을 그 등급에 맞지 아니하는 청소년 등의 이용자에게 시청에 제공해서는 아니 됨.²⁾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②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등급구분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조의2³⁾는 시청 지도수단을 ①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사전 차단 수단), ②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상시 모니터링 수단), ③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요청 시 모니터링 수단).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제도의 특성상 정부는 제도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운영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정 평가 항목은 사업자 지정 당시의 조

④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5(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1.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2.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3.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직·인력 및 운영 계획 등 지정 요건의 지속적 준수 여부와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등급분류 결과 및 영상물 자료 제출 의무 준수 여부로만 제한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시청 지도 수단’을 실질적으로 갖추었는지는 평가 항목에 없는 상황임.⁴⁾

현행법령상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OTT 등)는 시행규칙이 정한 시청 지도 수단(① 선별 시청 수단, ② 3개월간 이용내역 확인 수단, ③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③ (생략)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청 시 3개월간 이용내역 확인 수단)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제공하더라도 등급구분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⁵⁾ 이로 인해 OTT 플랫폼별로 청소년 보호 장치(키즈 프로필, 프로필 잠금, 시청 내역 모니터링 등)의 도입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후 확인 조치인 ‘이용내역 모니터링 수단’만을 단독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보호자가 청소년의 유해 영상물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워 시청 지도 수단으로서의 활용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시청 지도 수단의 구체적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기존의 ‘선택적 제공(어느 하나)’ 구조를 개편하여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영상물만 선별 시청할 수 있도록 사전적 수단(제1호)과 최근 3개월간의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수단(제2호)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면책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5(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1.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2.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3.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아울러 개정안 제53조제2항에 따라 도입되는 시청 지도 수단의 의무적 제공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여 법률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플랫폼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전 차단과 사후 모니터링 기능이 상시 결합된 청소년 보호 조치가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기 평가 항목과 연계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율적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실효적으로 자녀의 시청을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적정성 평가 시 시청 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평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업무개선 권고를 통해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사업자별 과금체계와 이용방식이 상이하므로 사업자별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시청지도 수단의 적용이 필요하고⁶⁾, 서비스 형태와 기술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시청지도 수단을 현행대로 하위법령에 위

6) 예를 들어 일반적인 OTT 서비스(넷플릭스, 디즈니+ 등)는 친권자가 가입한 계정 내에서 자녀 프로필을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반면, 일부 팬 소통 플랫폼이나 숏폼 플랫폼은 이용자 본인이 개별 계정을 생성하여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동일한 시청지도 기능의 도입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서비스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자에게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플랫폼마다 과금체계, 가입방식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수단 적용에 한계가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제도의 자율성 침해 우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취지 훼손 우려, 사업자 부담 과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결론적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시청지도수단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으나, 관계 부처·기관의 수정의견과 협회·업계의 신중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1

관계 기관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영상물등급 위원회 (‘26. 4. 17.)	• 제도 도입 취지 동의 - 개정안은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을 강화하고, 업무 적정성 평가 시 해당 수단의 제공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시청지도 수단을 모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인정하려는 것임. - 이는 청소년의 유해 영상물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적 통제(선별 시청)와 사후적 관리(이용 내역 확인)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재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라 보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청지도 수단 규정 방식에 대한 보완 필요 - 개정안은 시청지도 수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모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온라인 비디오물 서비스는 플랫폼별로 과금체계, 가입 방식, 이용 형태 등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수단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시청지도 수단의 구체적인 제공 기준 및 적용 방식은 사업자의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용 환경을 고려한 제도 운영 필요 - 개정안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가입을 전제로 온라인 비디오물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청지도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플랫폼의 경우 청소년이 직접 가입·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보호자의 사전적 개입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이에 따라 가입 주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이용내역 확인 및 청소년 보호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입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참고 2

협회 및 민간업계 의견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26. 4. 17.)	• 본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하위법령을 통해 충분히 규율되고 있는 사안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 부족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체부와 영등위의 사후관리와 평가 를 통해 정해진 기한 동안만 지정받을 수 있기에 청소년 보호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음 - 청소년 보호 캠페인, 부모와 함께하는 자체등급분류 간담 회, 프로필별 연령 제한 설정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 소년 보호 조치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법률에 의해 규정된 영등위의 업무 적정성 평가에도 청소 년 보호제도 실적이 반영되어 관리되고 있음 ○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상향입법을 통한 규제 시도 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은 영화비디오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 고 있음 ※ 하위법령을 통해 충분히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상향 입법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와 필요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26. 4. 17.)	• 사업자 부담 과다 - 청소년의 선별 시청 수단과 보호자의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의무화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본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두 가지 수단을 모두 의무화하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평가에 반영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산업 전반의 자율성 및 플랫폼의 차별적 수익 전략 제한 우려 - OTT 플랫폼은 계정시스템과 과금체계 등 사업자별로 운영하는 사업모델이 상이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도 다양함. 그러나 사업자 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무를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각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모델과 사업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예) 개별 계정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키즈프로필’, ‘프로필잠금’ 등의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 다인계정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즉 개정안 제53조제2항제1호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다인계정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규제로 귀결됨 • 시청강화수단(2건)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반영 관련 신중 검토 필요 - 청소년 시청수단 강화를 위한 제53조의 개정안에는 이의 없으나, 해당 시청강화수단 2건을 모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평가항목에 의무화하는 제50조의8제4항제3호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청 지도 수단의 제공 여부”는 의무 조항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별 시청 지도수단 운영현황

연번	사업자명	플랫폼명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1. 친권자 설정에 따른 선별 제공 수단	2. 3개월 이용내역 상시 확인 수단	3. 가입자 요청에 따른 3개월 내역 확인 수단
1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유)	넷플릭스	○	○	X
2	콘텐츠웨이브(주)	웨이브	X	○	○
3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유)	디즈니+	○	X	○
4	주식회사 티빙	티빙	○	○	X
5	쿠팡 주식회사	쿠팡플레이	○	○	○
6	애플코리아(유)	애플TV+	○	X	X
7	주식회사 왓차	왓차	○	○	○
8	(주)엘지유플러스	U+tv	○	○	○
9	(주)위버스컴퍼니	위버스	X	○	X
10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Btv	○	○	X
11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베리즈	X	X	○
12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모아(MOA)	○	○	X
13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컷츠	X	○	X

※ 사업자별 지정 당시 제출 계획과 2025년도 업무 적정성 평가 자료 기준 (2026. 6월 현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5(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1.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2.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3.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